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박균택 · 박정현 · 서영교
김주영 · 박홍배 · 김원이
주철현 · 양부남 · 한민수
박희승 · 허 영 · 권칠승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'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'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. 6. 24.자 2021헌바145, 284, 290[병합] 결정에서,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건(이하 “민간인집단희생사건”이라 함)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(이하 “중대한 인권 침해사건”이라 함)들은 조작·은폐 가능성이 높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현행법 제424조에서 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,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'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'로 한정하

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.

그런데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은 그 특성상 과거사정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니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,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인 2001년 11월 25일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함.

조작·은폐 등으로 그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폭력 등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비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의 과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,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에 대한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과거 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, 집단 사망·살인·상해·실종·고문·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,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(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4조제4호 중 “兄弟姉妹”를 “兄弟姉妹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
가. 집단 사망·살인·상해·실종·고문·구금 사건

나.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·고문·구금·조작의혹 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24條(再審請求權者)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,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 <단서 신설> <신 설> <신 설>	第424條(再審請求權者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<u>兄弟姉妹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</u> <u>가. 집단 사망 · 살인 · 상해 · 실종 · 고문 · 구금 사건</u> <u>나.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· 상해 · 실종 · 고문 · 구금 · 조작의혹 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</u>